

수원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가합3178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 원 고 1.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
2.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C의 파산관재인 D

원고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 고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양재석
변 론 종 결 2021. 10. 7.
판 결 선 고 2021. 11. 4.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8. 11. 6. 접수 제21689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비용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사해행위취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는 부인의 소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부인등기절차이행청구로 변경된 것으로 선택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보조참가인과 소외 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6. 10. 28.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서, 신용보증 원금 6억 8,000만 원, 보증채무 최고액 884,000,000원, 보증기간 2016. 10. 28. ~ 2018. 10. 27., 채권자 기업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 원천동지점장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조건은 2017. 10. 25. ‘신용보증 원금 612,000,000원, 보증채무 최고액 795,600,000원, 보증기한 2018. 10. 26., 근보증인 경우 보증채무 최고액 내에서 보증채무로 이행’으로 변경되었다.

2) 참가인은 2017. 12. 5. 소외 회사와 사이에서 신용보증 원금 3억 원, 신용보증기간 2017. 12. 5. ~ 2018. 12. 4., 채권자 G 주식회사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G 주식회사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3) 파산채무자 A, C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각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참가인의 대위변제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및 G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참가인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9. 1. 31. G 주식회사에게 376,661,000원을, 2019. 3. 7. 중소기업은행에게 594,745,158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파산채무자 A, C은 2011. 12. 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8. 11. 6.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216890호로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 5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파산채무자 A, C의 파산신청 및 원고들의 소송수계

1) 파산채무자 A, C의 채권자 참가인은 2019. 7. 18. 파산채무자들의 위 다항 기재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참가인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와 아울러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파산채무자 A는 2019. 8. 30. 수원지방법원 2019하단10212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B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파산채무자 C은 2019. 9. 18. 수원지방법원 2019하단10211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D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3) 원고들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06조, 제347조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의 수계를 신청하였고, 그 후 부인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소송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가 파산채무자들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것은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또는 상실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원고 파산채무자 C의 파산관재인

파산채무자 C이 파산을 신청한 2019. 2. 11.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8. 11. 6. 소외 회사의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4호의 무상행위에 해당한다.

다. 참가인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파산채무자들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편파행위로서 부인의 대상이 된다.

라. 피고

1) 파산채무자들이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소외 회사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거나 불가피한 행위로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파산채무자들 및 소외 회사가 참가인 등 채권자들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파산채무자들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적극재산이 감소하거나 소극재산이 증가하지 않아 무상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부인대상행위 여부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 것’을 필요로 하는데, 특히 편파행위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부인대상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 혹은 담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더 나아가 파산채권자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의 의사 내지 의욕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181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더하여 갑 제5, 6호증, 을마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파산채무자들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파산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파산채무자들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 또는 파산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면서 특정채권자인 피고에게 한 편파행위로서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의 부인대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이미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여러 건의 가압류 등기가 경료된 점에 비추어, 파산채무자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거나 적어도 장차 파산절차에서 배당재원이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을 전부 만족시킬 수 없는 충분한 개연성이 존재하는 상태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파산채무자 A는 2018. 10. 25. H에게 본인이 거주하던 평택시 I아파트 J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파산채무자 C는 2018. 3. 13. 자녀 K에게 평택시 I아파트 L호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던 점, 파산채무자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채 4개월이 지나기 전인 2019. 2. 11. 각 파산신청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파산채무자들은 특정 파산채권자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에 대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보인다. 즉, 이들에게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다른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파산채무자들이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거래에 있어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여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무이어서 파산채무자들의 일반 채권자들로서는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하여 책임재산이 감소되고 파산채권자들 사이 평등한 배당을 저해 받게 되는바, 이는 파산채무자들이 소외 회사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로해 준 것이어도 마찬가지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행위의 사회적 상당성 유무

파산절차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파산채권자에게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 채무자 보호와 파산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법의 지도이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법 제391조에서 정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여기에서 행위의 상당성 유무는 행위 당시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 상태, 행위의 목적·의도와 동기 등 채무자의 주관적 상태를 고려함은 물론, 변제행위에서는 변제자금의 원천, 채무자와 채권자와의 관계, 채권자가 채무자와 통모하거나 동인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신의칙과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마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파산채무자들이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2018. 10. 5.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와 월 3,500~4,000만 원의 매출금액, 원료매입분을 매월 상환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는 취지의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로써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향후 물품을 계속 공급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이후 소외 회사와 거래한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고, 그 밖에 추가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이 사회적으로 상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참조).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이 반복될 정도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이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 더하여 을마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는 2015. 11.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서 물품거래를 재개하였는데, 2017. 5.경부터 미수금이 계속하여 증가하여 2018. 7.경 미수금이 10억 원 상당에 이르고 미수금이 회수되지 않자 거래를 중단하였던 점, 피고는 2013. 1. 1.경부터 소외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외상거래를 하여서 소외 회사 및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파산채무자들의 재정상태를 비교적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이 다수의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인된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인의 대상이 되고, 파산관재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의 수계로써 피고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97조 제1항에 따라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승호, 판사 김보현, 판사 전지은

별지

목 록

1. 화성시 M 전 873㎡
2. 화성시 N 전 431㎡
3. 화성시 O 전 877㎡. 끝.

